

#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

의안 번호	167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4일

제안자 : 서울특별시의회  
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

## 1. 주 문

-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될 경우 “사유재산권 보장”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2020년 7월로 다가왔음.
-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나, 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정지원이 필요하며,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이 해당되지 않아 민원발생이 예상됨. 따라서 국비 지원 및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함.

## 2. 제안이유

- 대부분 도시공원은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하여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시계획 시설이나,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음.
- 공원구역 해제시에는 개발에 노출 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,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도시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.
- 서울시는 공원 확보를 위해 1조 7,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였지만(4.72km<sup>2</sup>) 여전히 매입하지 못한 40.3km<sup>2</sup>의 사유지가 남아있어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함.
- 또한 현재 공원의 사유지는 재산세 50%를 감면받고 있으나,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어 행위규제는 지속되지만 경감되었던 세제 혜택이 없어지므로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과 납세 불만 등의 민원이 예상되어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타사항: 없음

## 4. 이 송 처

- 가. 국 회 : 국회의장
- 나. 정 부 : 대통령실, 기획재정부, 행정자치부

#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

2020년 7월 이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될 예정이며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 될 경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는 난개발 등으로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,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.

대부분의 도시공원은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,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사무가 이관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. 실효시기가 가까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앙 정부의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.

서울시의 장기미집행 시공원은 71개소 94.6km<sup>2</sup>이며, 이중 사유지는 40.3km<sup>2</sup>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는 약 11조 6,7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.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4.72km<sup>2</sup> 면적을 보상하였으며 1조 7,495억원의 예산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였다.

2016년에는 『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여 공원 해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상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노력한 결과,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0% 증가(1,018억원)한 예산을 확보하였다. 앞으로도 서울시는 매년 최소 1,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실효에 대비할 계획이나, 서울시의 예산만으로는 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공원사무는 당초 중앙정부의 사무였으나,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.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업무가 이관될 때 국유지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어야 했으나, 서울시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71개소 중 국유지 면적 35.6km<sup>2</sup>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

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. 국유재산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,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제라도 중앙 정부는 미집행 공원 중 국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,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사무를 이관하기 전에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현재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『지방세특례제한법』에 따라 “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, 지상 건축물, 주택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고 있다. 그러나 현행 장기미집행 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경우, 행위 규제는 지속됨에도 그동안 경감되던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는 상황으로,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과 납세 불만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.

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 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 
다음과 같이 건의한다.

- 하나,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.
- 하나,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하도록 한다.
- 하나, 공원해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
2017. 3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